

남양주시 청탁금지법 상담내역

1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Q

주민센터 개청식에서 시공사가 참석자에게 선물(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불가능

A

건축물 시행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힘들며, 또한 사은품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7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볼수 있어, 시행사가 개청식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

그러나, 사은품 구매에 대한 비용의 출처와 사은품 제공에 대한 시공사의 자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선거법위반 저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시공사가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가함.

2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Q

결산검사위원회에게 남양주시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회계결산을 하는 결산검사위원회에게 남양주시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불가능

A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에 의거 선임되어,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정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면,

또한, 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업무연관성이 매우 높은 바 결산검사의 당사자인 남양주시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것은 불가함.

Q

주민센터 개청식에서 시공사가 참석자에게 선물(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불가능

A

건축물 시행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힘들며, 또한 사은품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7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볼수 있어, 시행사가 개청식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

그러나, 사은품 구매에 대한 비용의 출처와 사은품 제공에 대한 시공사의 자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선거법위반 저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시공사가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가함.

스승의 날 금품 수수 가능 여부(강사 등)

Q

☞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의 강사에게 수강생들이 회비를 걷어 선물 제공 가능한가?

▶ 가능

A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의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아니며,

또한,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음.

다만, 선물 제공에 따른 수강생 간 불화가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바, 금품 등의 수수 자제 필요

행사시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Q

☞ 시공사가 주민센터 개청식(공식행사)에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가능 여부

▶ 불가능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유

- 청탁금지법 : 가능합니다.

- 기념품 수수 대상이 일반인일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청식에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으로 제공받는 기념품 수수는 가능합니다.

A

- 공무원 행동강령 : 불가능합니다.

1)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일 경우 위반입니다.

- 시가 시공사에게 개청식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제11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제11조 제3항 제1호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제11조 제3항 제5호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Q 민원부서 금품등(음료수) 수수 가능 여부

Q

☞ 복지부서의 경우 민원인들이 음료 등을 주는 일이 많은데, 수수가능한 물품의 금액한도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A

▶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

▶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

- 수수 가능 여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내 용

-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가능

-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의거 공직자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됨.

- 다만,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 경우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

※ 음식물과 선물의 구분기준 ⇒ 민원인과 함께 취식여부

7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행사시 식사 제공 가능 여부

Q ☞ 보조금을 지원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A단체에서 행사장에 방문에 방문한VIP(시장, 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

A

-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 따라 금품 등에 해당,
-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가능
-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 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의거 공직자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됨.
-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규정) 경우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

※ 음식물과 선물의 구분기준 ⇒ 민원인과 함께 취식여부

8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Q

기념행사 시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 예외적 허용

A

법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단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음.

그러나 현재 직접적 이익관계가 진행 중이라거나 이익관계 진행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이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인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감사패는 특별히 고가의 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수할 수 있음.

다만, 청탁금지법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금품등의 수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